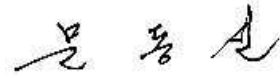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4년 2월 17일

군산시 훈령 제308호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제46조(병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6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계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계	273	125	21	4	6	8	86	40	41	57	4	6
본청 소계	167	67	18	3	6	5	35	26	41	24	4	5
공보담당관	2	2	1				1					
감사담당관	1	1					1					
새만금지원 담당관	1	1					1					
총 무 과	20	6		1		3	2			14		
기획예산과	1	1					1					
회 계 과	1	1					1					
세 무 과	2	2					2					
징 수 과	1	1					1					
민원봉사과	6	6		2			4					
지역경제과	2	2					2					
투자지원과	3	3	2				1					
해양수산과	1	1					1					
산림녹지과	5	1					1				4	
주민생활 지원과	1	1				1						
복지지원과	1	1				1						
여성아동 복지과	3	2	1				1					1
문화예술과	8	4	2				2			4		
관광진흥과	6	2	2									4
체육진흥과	14	11	10				1			3		
환경위생과	2	2					2					
자원순환과	45	1					1		41	3		
건 설 과	27	1					1	26				
건 축 과	1	1					1					
교통행정과	7	7			6		1					
토지정보과	6	6					6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약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직속기관 소 계	26	22		2			20			4		
보 건 소	17	15					15			2		
농업기술 센 터	9	7		2			5			2		
사 업 소 소 계	72	28	4				24	14		29		1
수 도 과	20	4	1				3	4		12		
하 수 과	11	1	1					10				
예술의전 당관리과	9	2					2			7		
시립도서관 관 리 과	20	12					12			7		1
철새생태 관 리 과	5	2	2							3		
차량등록 사 업 소	7	7					7					
의회사무국 소 계	8	8					3	5				
의회사무국	8	8					3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의 급여는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p> <p>1.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p>	<p>제4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별표 1】 (현행)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6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계 약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계	273	126	25	5	6	7	83	40	41	56	4	6
본청 소계	160	61	11	4	6	4	36	26	41	23	4	5
공보담당관	2	2	1				1					
감사담당관	1	1					1					
새만금지원 담당관	1	1					1					
총 무 과	21	6		1		3	2			15		
기획예산과	1	1					1					
회 계 과	1	1					1					
세 무 과	3	3					3					
징 수 과	1	1					1					
민원봉사과	6	6		2			4					
지역경제과	3	2					2			1		
투자지원과	3	3	2				1					
해양수산과	1	1					1					
산림녹지과	5	1					1				4	
주 민 생 활 지 원 과	1	1				1						
복지지원과	2	2		1			1					
여성아동 복 지 과	4	2	1				1					2
문화체육과	6	4	2				2			2		
관광진흥과	9	4	4							2		3
환경위생과	2	2					2					
자원순환과	45	1					1		41	3		
건 설 과	28	2	1				1	26				
건 축 과	1	1					1					
교통행정과	7	7			6		1					
토지정보과	6	6					6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약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직속기관 소 계	26	22		1			21			4		
보 건 소	18	16					16			2		
농업기술 센 터	8	6		1			5			2		
사 업 소 소 계	79	35	14				21	14		29		1
수 도 과	23	6	1				5	4		13		
하 수 과	11	1	1					10				
체 육 시 설 관 리 과	15	11	10				1			4		
시 립 도 서 관 관 리 과	14	9					9			4		1
문 화 회 관 관 리 과	5	1					1			4		
철 새 생 태 관 리 과	6	2	2							4		
차 량 등 록 사 업 소	5	5					5					
의 회 사 무 국 소 계	8	8					3	5				
의 회 사 무 국	8	8					3	5				

【별표 1】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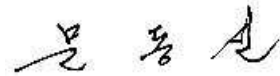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6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계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계	273	125	21	4	6	8	86	40	41	57	4	6
본청 소계	167	67	18	3	6	5	35	26	41	24	4	5
공보담당관	2	2	1				1					
감사담당관	1	1					1					
새만금지원 담당관	1	1					1					
총 무 과	20	6		1		3	2			14		
기획예산과	1	1					1					
회 계 과	1	1					1					
세 무 과	2	2					2					
징 수 과	1	1					1					
민원봉사과	6	6		2			4					
지역경제과	2	2					2					
투자지원과	3	3	2				1					
해양수산과	1	1					1					
산림녹지과	5	1					1				4	
주민생활 지원과	1	1				1						
복지지원과	1	1				1						
여성아동 복지과	3	2	1				1					1
문화예술과	8	4	2				2			4		
관광진흥과	6	2	2									4
체육진흥과	14	11	10				1			3		
환경위생과	2	2					2					
자원순환과	45	1					1		41	3		
건 설 과	27	1					1	26				
건 축 과	1	1					1					
교통행정과	7	7			6		1					
토지정보과	6	6					6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계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직속기관 소 계	26	22		2			20			4		
보 건 소	17	15					15			2		
농업기술 센 터	9	7		2			5			2		
사 업 소 소 계	72	28	4				24	14		29		1
수 도 과	20	4	1				3	4		12		
하 수 과	11	1	1					10				
예 술 의 전 당 관 리 과	9	2					2			7		
시 립 도 서 관 관 리 과	20	12					12			7		1
철 새 생 태 관 리 과	5	2	2							3		
차 량 등 록 사 업 소	7	7					7					
의 회 사 무 국 소 계	8	8					3	5				
의 회 사 무 국	8	8					3	5				

군산시모자자립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4년 2월 17일

군산시 훈령 제309호

군산시모자자립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군산시모자자립시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자복지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자립시설”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자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모자보호시설”을 각각 “모자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입소 대상)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모자가족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모자복지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자립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u>모자가족복지시설</u>----- ----- -----.</p>
<p>제2조(설치 기준) ①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u>모자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준하며 기존의 모자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할 때에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u></p>	<p>제2조(설치 기준) ① ----- ----- <u>모자가족복지시설</u>----- ----- <u>모자가족복지시설</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입소 대상)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u>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정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가정을 말하며,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중 자활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모자보호시설 입소대상자를 우선한다.</u></p>	<p>제3조(입소 대상)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4조에 해당하는 <u>모자가족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가족</u>을 말한다.</p>
<p>제5조(입소 기간) 입소자의 입소</p>	<p>제5조(입소 기간) -----</p>

군산시 고시 제2014-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0호선 외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2월 1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1-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0호선 외2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하나리움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기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 고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 로	중로2-70	15	40	8	40	7	40	274.1	7	40	274.1	
	소로2-360	8~12	1,097	8	1,097	4	284	1,074	4	284	1,072	감2㎡
	중로3-66	11~14	400	8	400	3~6	400	1,803	3~6	400	1,791	감12㎡
계			1,537		1,537		724	3,151.1		724	3,137.1	감14㎡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길 13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하나건설 대표 박안수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2. 1. 16 ~ 2014. 1. 31
 변경 2012. 1. 16 ~ 2014. 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실음 생략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4-16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17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7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 - 177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4년 1월 27일

군 산 시 장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6. 8(131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 1) 시청 · 군청 · 구청(읍 · 면 · 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게 되오니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및 인터넷 포털(Naver) 지도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분할개시결정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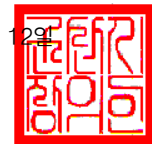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2014-229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 기간 : 2014. 2. 12 ~ 2014. 3. 4
-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산		문화	888-4	대	130.9	신영주	1944.03.18	군산시 문화동 888-3	김정희
군산		구암	601-62	공장용지	328	이동철	1939.12.07	군산시 외산4길 26-1(구암동)	김성훈 외 5

2014년 2월 12일
군 산 시 장



297mm×210mm [백상지 80g/㎡]


분할조서 의결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230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4. 2. 12 ~ 2014. 2. 25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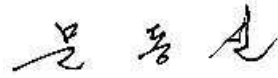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후 필지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산		금광	159-1	대	119	2	김춘봉	1958.01.22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59번길 28, 에이동 201호(송월동1가, 예촌빌라)	
군산		산북	1829-2	대	460	2	김정춘	1944.05.07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78-2 금강아파트 101동 207호	정성태
군산	성산	대명	143-3	대	641	4	송재완	1952.01.29	군산시 성신면 대명리 143-3	최요화

2014 년 2월 12일
 군 산 시 

364mm×257mm [백상지 80g/㎡]

군산시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4년 2월 17일

군산시 예규 제25호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 일부개정예규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녀차별금지및구제한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을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으로 한다.

제2조 중 “군산시의 소속 직원(군산시장”을 “군산시와 소속기관(군산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규정에 의한”을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군산시장”으로 하고,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주장하는 자 및 조사”를 “주장하거나 조사”로, “협력하는 자”를 “협력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6인”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성별,직급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소집한다”를 “소집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u>남녀차별 금지및구제한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u>에 따라 <u>군산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여성발전 기본법</u>」 제1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u>군산시의 소속 직원(군산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u>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u>군산시와 소속기관(군산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u>----- -----</p>
<p>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 이란 <u>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규정에 의한 성희롱</u>을 말한다.</p>	<p>제3조(성희롱의 정의) ----- ----- 「<u>여성발전 기본법</u>」 제3조제4호에 따른----- -----</p>
<p>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생략)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현행과 같음)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③·④ (생략)

제6조(예방교육) ① 총무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고충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생략)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예방교육) ① 군산시장-----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고충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른 -----
-----.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

지) ①군산시장(인사·복무 등
 에 관한 권한을 군산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
 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
 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생략)

②군산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
 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
 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
 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위
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군산시

지) ①-----

 -- 사람을 -----
 --- 주장하거나 조사--- ---
협력하는 사람-----

 -----.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
 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1
조에 따라-----

 ---.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
 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6명-
 -----.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과 군

소속 직원 중 군산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성별, 직급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④-----
----- 그 밖의 -----
-.

제12조(위원회운영) ① -----
----- 소집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2005.12.29일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방지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총무과장을 군산시장으로 변경(안 제6조)
- 다.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안 제12조)
-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맞추어 일부 정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취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27조의 2